

영등포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14. 2.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4호로 2014년 2월 4일 신홍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제4조)
- 나. 구청장에게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는 구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 아울러 국어 사용의 촉진과 발전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국어의 발전·보전 및 올바른 국어사용 등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 국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등은 한글로 작성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 안 제8조에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국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한글 관련 유공 국민과 공무원의 포상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비속어·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등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훼손됨에 따라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선언적·권고적 내용이지만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경향을 반성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